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김이배* · 강영기**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은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와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잘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도상으로는 북한의 경우가 중국의 그것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률보다도 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법률과 실제운용상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인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적인 통제 및 간섭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조건적 제약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회계제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면 해외투자자의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고 점차 투자처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경제특구, 개방정책, 회계규정, 무기검증, 내국민대우, 우대조치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kyibae@daum.net, 주저자

**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kyk-1006@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9년 12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7일

I. 서 론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외국인투자법제 정비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미 북한에도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인 불비가 있을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요소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 예컨대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진 국가들의 외국인투자법제 시스템 및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조치로서의 법률정비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법적 시스템이 현재의 우리나라제도와 상이한 상황에서는 투자 등 경제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92년 10월에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을 제정하였고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6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오면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북한이 중국식 경제특구방식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합작기업 형태의 투자를 권장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선이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외채상환의 연기 등 국제적인 신용도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유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파악해보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의 기본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면 한반도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간의 공존공영이 반석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기업이 직접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과 달리 남북경제협력관계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과 제도는 물론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 법률과 제도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승인이 필요하고, 투자 시에는 2005년 7월 6일에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북남경제협력법은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투자자 모두에게 공통된 인식이므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계시스템이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북한 회계제도의 기본 구조와 더불어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II.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1.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개관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해외의 자본유치와 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각종 법령의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데, 1984년의 합영법 제정을 신호탄으로 1992년 및 1998년 헌법개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다양한 법령정비가 그것이다.¹⁾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령정비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정비의 경위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대해서 2000년 12월 27일에 통일부가 펴낸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을 보면,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외국인투자법(1992.10.5. 제정), 합영법(1994.1.20. 개정), 합작법(1992.10.5. 제정), 외국인기업법(1992.10.5. 제정), 토지임대법(1993.10.27. 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1993.1.31. 제정), 외화관리법(1993.1.31. 제정), 외국투자은행법(1993.11.24. 제정), 나진-선봉 경제무역지

1) 박형준, 2013,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북한학 연구』 제9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39

대법(1993.1.31. 제정) 등 9개 경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북한은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하고, 경제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 폭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이번 외국인투 자관계법의 개정은 형식면에서는 관련법들 간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조문의 형식을 통일하고 법률용어상의 표현을 보다 정돈하며,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술방식의 개 선을 도모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행정규제의 전반적인 완화, 노동력채용에 관한 경직성의 해 소,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형벌규정의 일부삭제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한 점이 외국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 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요법령의 내용

(1)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²⁾은 22개 조문의 간략한 법이지만 그 법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북한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변화를 만든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동법은 합영(합영법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합영기업은 공화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합작(합작법 시 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 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일반원칙과 질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설립 과 투자자의 권익보호, 투자분야 및 혜택과 기업의 운영, 분쟁해결 등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과 질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³⁾ 동법의 제정으로 종래에 외국인투자형태를 합영에 국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외국인 의 대북투자형태가 확대되었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외국인투자가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며, 1997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111건(투자금액 7억5천만 달러)이었고 그 중 실제로 유치된 것이 75건(투자금액 6천 3백만 달러)이었다고 한다.⁴⁾

2) 『외국인투자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3) 만연교,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중국법연구 제38집, 한중법학회 : 387

4) 이장로·이제홍·이춘수, 2006,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 -합작법시행

그런데 전문 총 22개에 불과한 외국인투자법의 조문은 지나치게 간략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고 엄격한 외환관리제도와 미비한 조세 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수익 분배와 투자 원가의 적절한 회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주저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된다.⁵⁾

(2) 합영법

북한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으로 나선 시발점이 1984년의 합영법 제정이었다.⁶⁾ 1984년 최초로 외국인투자법체로서 제정된 합영법은 1994년 1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 합영법 시행규정도 새로 정비되었는데, 동법의 목적은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법 제1조).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법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본래 합영기업은 여럿이 공동출자방식으로 설립하는 기업형태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회사의 형태와는 달리 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조직되고 기업구조가 불안정한 것은 물론, 합영자는 합영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관련 정책의 결정은 합영자 전체의 집단결의로 의결하는 특징을 가진다.⁷⁾ 그런데 북한의 합영법 제4조를 보면,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여 유한책임회사임을 표명하고 있다.⁸⁾ 이러한 합영기업의 설립절차를 보면, 정부의 소관부처에 기업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등록부서에 등록을 하는데, 북한 합영법 제10조에서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 인민위원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그리고 당사자가 기업설립심사기관인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계획기관과 재정기관 및 과학기관 등과 설립신청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¹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국제지역학회 : 605

- 5) 만연교, 전계 논문(주 3), 404
- 6) 박형준, 전계 논문(주 1), 41
- 7) 오동호, 2009,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4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249
- 8) 오동호, 상계 논문(주 7), 250
- 9) 오동호, 상계 논문(주 7), 251
- 10) 북한 합영법 시행규정 제17조 공화국 측 투자자는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문건을 해당한 관계기관에 보내어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출자할 현물재산 명, 노력, 자재, 원료, 동력, 용수의 보장조건, 생산 및 생산물처리,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2. 중앙재정기관과는 총 투자액, 현물 및 현금출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합영기업 설립절차가 중국의 제도보다 번거롭고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¹¹⁾

북한의 1984년 합영법은 특구 설치 등을 배제한 제한적인 개방이었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고, 1994년의 법 개정은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치였으나 외자유치 관련 법규의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고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요건이 부족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²⁾

(3) 합작법

합작법¹³⁾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2년 10월(1999년 개정¹⁴⁾)이고 1995년 동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었는데, 합작법은 21개 조문, 시행규정은 13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합작법은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 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제2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며(제13조),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은 북한의 외화관리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15조).

합작투자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제5조),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등을 첨부하여 합작기업창설을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승인 또는 부결을 결정하여야 한다(제7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 인민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8조).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 몹을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창설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을 할 수 있다(제10조). 합작기간이 다 되면 합작은 끝나고,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 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하며(제20조), 합작과 관련된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협의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북한정부가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제21조).

수익성 타산자료 3. 중앙과학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 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4. 이 밖의 관계기관과의 해당한 자료 ; 오동호, 상계 논문(주 7), 251

11) 오동호, 상계 논문(주 7), 251

12) 출처 : 다음백과 ‘합영법’ 참조

13) 「합작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14) 개정 「합작법」 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4) 외국인기업법

1992년 성립된 외국인기업법¹⁵⁾은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투자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질서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법의 목적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며(제1조), 외국투자가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기업이라 한다(제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하는데, 이 때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날부터 15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하고(제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기업은 주소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회계문건을 두어야 하며 재정관리와 회계를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계산규범에 따라야 하며(제19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제27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되고,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8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제2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상이한 때는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한정부가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였다(제31조). 그리고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¹⁶⁾을 제정하였다.

(5)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은행법¹⁷⁾은 합영은행 외에도 외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에 투자한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1993년 12월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북한이 국제경제와 금융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제1조).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하고, 외국은행과 외

15) 「외국인기업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법조문 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57233

16)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1994.3.29. 정무원 결정 제13호로 채택

조문 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57952

17) 「외국투자은행법」 1993.11.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

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12&idxno=394&page=8&total=185&sc_area=&sc_word=

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제2조). 외국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은행설립의 신청을 하고(제10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제13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담당하고(제6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营业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되고(제14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 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쪽 출자자는 상대방 출자자와 합의하여야 한다(제17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고(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 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제27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협의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제32조). 그리고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외국과 금융분야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¹⁸⁾을 제정하였다.

(6)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3년 1월에 제정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¹⁹⁾은 한국기업과의 합병 및 합작은 물론이고 100% 독자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기업소득세의 감면, 관세의 면제와 무비자입국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⁰⁾ 이후 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이번 수정 보충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라진선봉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안보불안요인, 외국인 출입국 규제, 개발 인프라의 미비, 과도한 개발계획,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을 고려한 폐쇄적 운영 등으로 실패라고 평가되는 라진선봉지대의 개발을 통해 북한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2010년 개정법에서는 2007년 9월 개정법에서 ‘해당 중앙기관의 임무’를 명시한 제10조를 삭제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임무’도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으로 위임하였으며, 제9조에

18)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1994.12.28 정무원 결정 제48호 www.pyung.co.kr/weh4.htm

1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20) 문준조, 2011, “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을 통해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2011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 352 ; 박형준, 전개 논문(주 1), 41에서 재인용

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하고 ‘라선지도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중앙기관”, ‘라선 인민위원회’는 “현지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는 등 중앙기관급인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을 신설하고 라진특구의 자치역량을 높였다.²¹⁾

개정법에서 신설된 내용이 제3조(투자 분야와 투자장려부분), 제8조(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제11조(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의 투자신청 문건 심의), 제17조(비상설지도위원회의 운영), 제21조(지대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경제거래), 제24조(외국투자기업종업원의 월노임 최저기준)등의 5개 조항인데, 특히 제8조에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동포를 비롯하여 한국기업의 활동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²²⁾ 그리고 제21조에서 “라선지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밖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경제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기업의 활동을 추가하여 라선지대의 생산품이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²³⁾ 또한 종래의 기업소득세율 14% 일괄 적용하던 것을 개정법 제39조에서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 이익의 10%로 한다”고 규정하여 라선지대외의 투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추가하였다.²⁴⁾ 그밖에 제20조에서 투자기업의 지사나 대리점 및 출장소의 설립 관련 제한을 완화하였고 공업구나 농업구, 과학기술구 및 가공무역구 등의 설립 및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4조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²⁵⁾

한편,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중협정이 체결되고, 조중협정의 구체화를 위한 총계획요강을 2011년에 작성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조중협정과 총계획요강의 합의사항 시행을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 개정하고 2013년 9월 그 하위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중공동관리구역에 관할할 관리위원회의 기구와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개발규정’은 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 경영, 도급생산 경영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기업창설운영규정’은 그 지대의 기업 창설과 운영, 재정회계 등을 규정하였고,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은 지대의 노동자 채용과 해고, 보수, 노동보호 등에 관한

21) 정명진, “北, 중앙기관 급 ‘라선지도기관’ 신설—정부 ‘라선무역지대 개정법’ 입수 … 현지 자치력 높여”, 2010.3.14.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66>) 2019.12.29. 최종방문

22) 정명진, 상계 기사(주 21)

23) 정명진, 상계 기사(주 21)

24) 정명진, 상계 기사(주 21)

25) 정명진, 상계 기사(주 21)

사항을 규정하였다. 상기 하위규정들은 종래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나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와도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한다.²⁶⁾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외국인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보상절차와 보상액수 산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조사절차와 이의제기 방법도 상세하지 못한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²⁷⁾ 또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 신변보장과 관련하여 북한 형사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북아 개발협력의 주요기지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²⁸⁾

(7) 경제개발구법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경제특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큰 의미를 갖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경제특구 이외에도, 평안북도 신의주시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되었고 그 밖에도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신설되었다.²⁹⁾ 즉,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동년 11월에 13개 개발구와 신의주경제특구의 신설, 2014년 7월에 6개 개발구의 신설로 개발구 수가 19개가 되었으며 15억 9,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³⁰⁾

2013년 5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되었는데,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채택한 날(5.29)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³¹⁾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하와 같다.³²⁾

우선 경제개발구의 개발주체는 ‘개발기업’이고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하면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제21조), 개발기업이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26) 최우진, 2014,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63권 제12호, 법조협회 : 146

27) 최우진, 상계 논문(주 26), 147

28) 최우진, 상계 논문(주 26), 147

29) 朝鮮平壤外文出版社, 2017, 『朝鮮概観』(中文版), 53—68 ; 만연교, 전계 논문(주 3), 398에서 재인용

30)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院, 中国驻朝鲜大使馆商务经济参赞处, 商务部对外投资与经济合作司, 2017, 『对外投资合作国别投资指南(朝鲜)』 : 18 ; 만연교, 상계 논문(주 3), 398에서 재인용

31) 「개성공업지구법」 2002.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

32) 이하의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은 김치관, “북 경제개발구, 중앙특수지대지도기관이 최저임금 결정 <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2013.8.26. 통일뉴스 기사 참조(<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55>) 2019.12.29. 최종방문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제24조),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으면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제25조). 외국인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제20조). 또한 제29조에서 기업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고, 개발한 토지의 이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하도록 하여 개발기업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법 제4조에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담당하는 사업은 ①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②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③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④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⑤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심의기중의 검토승인 ⑥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⑦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등이다(제33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을 하고(제17조), 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제18조).

한편, 경제개발구 지역선정원칙으로 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②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③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④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제11조), 이는 주민들에게 경제특구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기존 정책보다 진전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46조에서 “경제개발구에서 유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고 명시하고 북한의 원 외에도 달러나 유로화가 공식적인 유통화폐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제43조에서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 밖의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여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 등이 특징이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분쟁발생시의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하였고(제61조), 종전에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이 안되면 북한이 정한 중재 및 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1월 외국인투자관계법 제정비 시에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경제개발구법에서 종전의 북한 법률에는 없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60조)과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제61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제62조)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반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58조(통신보장)에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 훈춘, 도문, 연변 등 동북지방에 설치되고 있는 ‘경제개방구’와 유

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개방모델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투자 관계법령들의 대폭 정비에 이어 이처럼 경제개방구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특징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체계는 외국인투자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본법 등을 하위법으로³³⁾ 하고 그 시행세칙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개방 관련법을 보면, 북한이 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측면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법제의 마련에 있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하여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2.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북한은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91년 12월에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제한적이지만 대외적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유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하여 2014년까지 50여 개의 해외자본유치와 관련된 법규들의 제정 및 개정으로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법적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였다.³⁴⁾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해외자본의 유치가 부진한 것은 대체로 북한에의 투자환경이 열악하였기 때문인데,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폐쇄성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낙후성에 더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환경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관련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로 투자환경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한국기업들의 북한진출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³⁵⁾ 여전히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으로서 주로 지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의 구체성 결여, 불명확성으로

33)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투자3법’이라고 부른다. 김한중, 2005,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 374-375 참조 ; 오동호, 전제 논문(주 7), 248에서 재인용

34) 박승일·만연교, 2019,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70

35) 전지명, 2009,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5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88

인한 투자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둘째,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들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세금감면도 일정한 법정요건에 의한 감면이 아니라 해당 감독기관의 자의적 재량에 의해 감면 여부와 감면의 정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령상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법령의 개정작업 등을 통해 법조문의 형식적 통일, 불명확하던 의미전달의 개선이 진행되어 왔지만, 입법기술상의 미숙함과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공통적인 법 개념의 미분화, 법령의 구체성 부족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리스크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³⁶⁾

III.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

1. 북한 회계제도 검토의 필요성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기업 관련 회계의 목적이나 회계감사의 주체 등 회계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의 회계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회계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북한에 대한 투자리스크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극복과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계시스템의 존재이유가 상이하다면 북한회계의 이해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도 거쳐야할 과정이다.

2. 북한 회계제도의 기본 구조

가. 북한 기업회계의 개관

회계학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당의 정책 및 노선을 토대로 하여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분석 및 검증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³⁷⁾ 그리고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 북한 내의 기

36) 박형준, 전계 논문(주 1), 39

37) 최연식·정형록·이지연·김미옥, 2017, “북한 회계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북한의 회계검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 161

관 및 기업소나 단체 등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는 국가에 기업 등의 활동과 관련된 회계 수치를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기업 등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검증은 기업 등이 국가가 제정한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재정관리제도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³⁸⁾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회계감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기계산 및 결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와 간접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나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같은 이미지는 약하다고 할 수 있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³⁹⁾

한편, 북한의 회계 관련 규정을 대별하여 보면, 그 적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① 회계법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 및 기업소나 단체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②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 ③ 특정한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용대상별로 상이한 회계규정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한 것 자체가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 제도 일변도가 아닌 시장경제적인 사회주의 제도로 변천해가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⁴⁰⁾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 회계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반영한 회계제도를 병용하려는 노력을 가미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에 취하고 있었던 형태와 유사점이 크다고 한다.⁴¹⁾

나. 개별 회계 규정의 주요 내용

(1) 회계법

회계 관련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은 북한 내의 기관 및 기업소나 단체 등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회계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분류되며,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는 경영회계에 속하고 지방회계와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 등은 종합회계에 속한다.⁴²⁾ 그런데 북한의 기관 및 기업소나 단체 등은 사회주의적인 특성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회계 및 공기업회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⁴³⁾

38) 최연식·정형록·이지연·김미옥, 상계 논문(주 37), 158

39) 최연식·정형록·이지연·김미옥, 상계 논문(주 37), 160

40) 김병호, 2007,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중국회계기준의 변천을 참조하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 524

41)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5

42)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6

43)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6

(2)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회계규정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회계 관련 규정에는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이 있고, 부기에 대한 검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이 있다.⁴⁴⁾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경제적인 회계제도의 기본개념을 도입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회계의 기본구조는 시장경제의 회계구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본의 개념은 물론 자산과 부채, 자본 등의 분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한다.⁴⁵⁾

(3) 경제특구 대상 회계규정

개방경제 초기에 설치한 경제특구(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회계규정인 「외국인투자기업회계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1996년 제정된 것으로서 주로 나진·선봉지구에 투자를 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다.⁴⁶⁾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회계 관련 규정과 같이 경제특구의 성격에 따른 각각의 관련법과 시행규정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 특히 한국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개성공업지구의 경우를 보면, 「개성공업지구기업 창설·운영규정(2003년)」의 시행규정으로서 제정된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2005년)」, 「개성공업지구기업채정규정(2005년)」, 「개성공업지구회계검증규정(2005년)」 등이 있다.⁴⁷⁾ 이러한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의 내용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에 비하여 회계처리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인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모두 한국기업이므로 사실상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회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3.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의 현주소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회계 관련 규정의 하나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이 있고, 「외국인투자기업회계규정」 및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 등이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회계규정」은 시장경제의 회계제도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계방법에 대한 일부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앙재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

44)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6

45)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5

46)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4

47)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6

48) 김병호, 상계 논문(주 40), 525

부분 결정되므로 북한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익이 계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발생한 이익의 외부유출도 중앙재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점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북한에 투자시의 불확실성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경제특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과 같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상당히 반영한 회계규정이 제정된 것을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반영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IV.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법규의 내용 및 특징

1.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개관

가. 중국의 경제개발 단계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제 정비의 경위

외국자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형식에 의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외자독자기업법(外資獨資企業法), 중외합병경영기업법(中外合弁經營企業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의 이른바 외자3법(外資三法)을 중심으로 한 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관리되어 왔다.⁴⁹⁾ 그렇지만 외국인에 의한 투자방법의 다양화와 외국인투자의 증가, 외국인기업에 대한 내국기업과 동등한 취급의 요청증대 등 사회경제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의한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월에 종전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한 법제도인 외자3법(外資三法)을 폐지하고, 회사형식의 투자뿐만 아니라 용자나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형식의 외국투자에 널리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투자에 관한 새로운 기본법인 ‘외국투자법’의 초안이 공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외국인기업의 설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외국투자법 초안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의 일부는 실현되었지만, 외국투자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안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제정에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2017년 후반부터 외국투자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8년 4월에 공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업무계획에서 ‘외국투자법’의 법안심리를 같은 해 12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동년 12월에는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49) 오동호, 전계 논문(주 7), 250 참조

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특징과 주요 내용

2019년 3월 1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투자에 관한 새로운 기본법인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이 성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외상투자법의 개요와 적용범위

외상투자법이란 중국에서의 외국기업과 개인 등에 의한 회사의 설립과 매수 등을 비롯한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외국자본투자의 새로운 기본법이다.

동법은 전6장 합계42개조로 구성되며, 주된 내용으로서 ①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의 촉진, ② 투자보호, ③ 투자관리 등의 기본적인 방침과 형태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규정내용의 대부분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관계법령의 제정과 변경, 실무운용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외상투자법의 주된 규정항목과 내용

외상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형태에 대해서 제2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고,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형태에 대해서는 제3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에서는 제4장 이하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원칙으로 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실시하는 관리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안전심사제도의 구축도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였고 심사와 인가절차도 여러 규제기관이 관여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외국투자자도 중국의 기업법제에 따라서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하도록 한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기업들은 중국기업법제와 외국투자법체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또는 관련규정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향후 더욱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2.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의 개관

가. 베트남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정비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합투자법을 2005년 11월에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50) 정웅기, 2016,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와 기업법제의 현황과 특징”,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충남대학교 : 156

위해서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WTO 가입에 따른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통합투자법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직접투자활동, 해외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등 총 10장 89조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채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즉, 1996년의 베트남 외국투자법⁵¹⁾, 2000년의 외국투자법 일부조항의 보충과 개정법, 1998년의 투자장려법을 대체하는 투자법이 2005년 11월에 성립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투자금지 및 경영금지분야와 조건부경영투자분야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2014년에는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베트남 국외에서의 해외투자활동에 관한 투자법이 성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후 투자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베트남에서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나.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과 주요내용

1987년 외국인투자법의 공포 이후 투자환경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차에 걸친 법 개정을 하는 등 강력한 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의지로 대외관계가 개선되면서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⁵²⁾ 또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견고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종교적 민족적인 갈등이나 테러위협이 없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는 점도 외국인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⁵³⁾ 베트남의 기업법과 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이 2014년 11월 통과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종래의 모호하던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던 금지업종이나 조건부 허가업종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기대를 모았다. 개정 투자법에서 투자허가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IC(Investment Certificate, 투자허가서)로 일원화되어 있던 해외투자허가서류를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로 이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ERC를 사용함으로써 절차상 동일성을 확보하고 혼란의 여지를 축소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해진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베트남정부가 개정법의 시행에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한동안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구법과 비슷한 규율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

51) 그 이전의 법제에 대해 참고할 문서로는 최철영, 1993,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이 있음

http://www.klri.re.kr/viewer/skin/doc.html?fn=rpt_4017431881040725374_ca93-04.pdf&rs=/doc_convert/FILE_000000000016083UquNA

52) 유재현, 2006, “베트남의 최근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평가”, 해외경제정보 제2006-28호,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 7

53) 유재현, 상계 논문(주 52), 11

3. 기타 사회주의국가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특징

가. 라오스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현황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도 경제규모와 시장규모가 작고 외국인투자자의 주목을 아직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본래 사회주의국가로서 처음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심이 컸지만, 점차 약해졌고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도 관리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장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2009년에 내외통일의 투자법이 제정되었는데, 캄보디아와는 달리 내외차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라오스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고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Lao P.D.R.)의 단일창구서비스(One Door Service)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서 내국인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노력하였다.⁵⁴⁾ 즉, 통합투자촉진법은 라오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확장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를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투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장, 신곡하고 정확하며 편리한 투자신청절차 등을 목표로 하였다(제1조).⁵⁵⁾ 투자의 형태는 용자(내국자본, 외국자본), 내외합변(합작),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라오스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주로 합작투자기업이나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의 형태를 활용하지만, 상당수의 사업 분야(전력사업, 광산업 등)에서는 외국인단독투자가 금지되어 있어서 라오스 정부나 내국인파트너와 합작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⁵⁶⁾ 그리고 라오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라오스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제57조).⁵⁷⁾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든 투자자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라오스의 법과 규정 및 라오스가 맺은 국제조약에 따라 권익의 보호를 받는다(제60조).⁵⁸⁾

나. 캄보디아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현황

캄보디아의 국내시장은 베트남과 미얀마보다는 작고 주목도 받지 못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외국자본의 수용에 대한 문호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고, 내외공통의 투자법이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토지소유를 제외하고 내외차별이 거의 없는

54) 이행규 외 2인, 2010,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 8

55)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177

56)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178

57)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191

58)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215

상황이다. 투자법에서는 약간의 투자금지분야와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우대조치의 비적격분야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대조치 비적격분야로서는 투자금액을 불문하고 비적격인 것과 투자금액에 따라서 우대조치의 적부가 나뉘는 것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4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투자법상의 공무원의 재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캄보디아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의 윈스탑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며, 투자등록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노력하였다.⁵⁹⁾ 개정 투자법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를 제외하고는 비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여러 지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로 승인되어 최종투자등록증명서(Final Registration Certificate)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이나 설비자재수입시의 면세조치, 특별감가상각의 인정, 투자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였다.⁶⁰⁾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별법령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투자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외국인이게 금지되는 투자분야도 없고 일정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투자가 금지된다.

분쟁해결방식은 외국인투자자의 캄보디아 투자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는데, 2006년 3월 캄보디아 정부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을 제정하고 법원결정을 대신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2009년 8월 12일에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할 「국립상사중재원의 설립을 위한 국립상사중재원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총리령 제124호」(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a National Center of Commercial Arbitration)를 공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⁶¹⁾

다. 미얀마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현황

미얀마에서는 예전부터 법제도상으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투자가 인정되어 있었지만, 경제제재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외국자본이 들어 왔다. 민주화와 시장개방 이후인 2012년 새로운 외국투자법과 미얀마인 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외국투자법, 그 시행규칙, 고시(사실상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투자규제분야를 규정하는데, 투자금지분야와 투자제한분야로 나뉜다. 투자제한의 형태는 외국자본 100%는 불가, 합작비율의 요구(외국자본비율에 대한 조건), 일정한 투자규모의 요구 등으로 나뉜다. 만일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분야는 외국자본 100% 출자도 가능하며, 외국투자법 및 시행규칙에는 법인세, 수입관세의 감면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사용권에 관

59)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6

60)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16

61) 이행규 외 2인, 상계 보고서(주 54), 75

한 것, 외화송금에 관한 것 등의 우대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에 외국인 투자 촉진과 우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법을 새로이 개정하였고, 2013년 1월 31일에 미얀마 정부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 투자규칙(Foreign Investment Rule)과 경제활동 유형에 대한 규정(Classification of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등을 공표하였는데, 동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허가요건)이 엄격하고,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때 지켜야 할 사항(즉 규제)이 증가 또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⁶²⁾ 동 개정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등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들을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외국법인의 민간인 토지 사용 허용과 시장 환율의 적용, 친기업적인 투자환경의 구축 등이다.⁶³⁾ 2014년 1월 23일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 우대조치의 향상을 위하여, 2011년에 만든 경제특구법을 새로이 정비하여 개정된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SEZ법)을 공표하였는데⁶⁴⁾, 미얀마는 2013년 현재 짜옥퓨(Kyauk Phyu), 드웨이(Dawei), 띠라와(Tilawa) 등 3지역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경제특구법은 이들 경제특구에만 적용된다.⁶⁵⁾ 경제특구에서는 다른 법률(예컨대,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나 수출입 및 외환관리에 관한 규제 등)보다 우선하여 경제특구법이 적용되고(제 89조), 법률의 시행에서 정부가 매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투자환경의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⁶⁶⁾

미얀마에는 외국인 투자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외국자본도 자유롭게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있는 영역은 외국인 투자법이나 경제특구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우대정책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이나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로서의 측면과 함께 외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미얀마에서의 외국인투자규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이나 법률의 시행 등 다양한 수준에서 실시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⁶⁷⁾

62) 조은래, 2014,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법학연구소 : 453

63) 조은래, 상계 논문(주 62), 448

64) 조은래, 상계 논문(주 62), 463

65) 조은래, 상계 논문(주 62), 464

66) 조은래, 상계 논문(주 62), 464

67) 조은래, 상계 논문(주 62), 450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를 살펴보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공통된 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외국인투자 관련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⁶⁸⁾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합영기업법의 설립절차는 중국에 비하여 북한의 제도가 더욱 번거로우며, 중국에서의 합영기업 설립심사권이 비교적 분산된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중앙정부기관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경영활동에서도 중국 합영기업의 경영자출권이 비교적 많이 보장되는 것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물자의 수입이나 제품의 판매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정부의 구속을 받고 있다. 또한 합작기업의 설립형태도 중국보다 융통성이 적고 북한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오직 북한 측 당사자만이 가지며 외국당사자는 경영문제에 관한 자문적인 역할만 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토대로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단 제도상으로는 북한의 경우가 중국의 것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제도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보다도 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관행이 여전히 강해서 법률과 실제운용에 있어서 괴리가 클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적인 통제 및 간섭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조건적 제약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법률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투자법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용어 및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특히 요건이나 효력발생,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68) 중국을 입법모델로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홍택·오강수, 1995,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KDI 연구보고서 1995-05, 한국개발연구원을 참고

없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법 해석의 신뢰성 제고 및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는 제도설계상의 문제와 불완전한 법 운용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에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경제협력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북한의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한국 법률과 제도의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먼저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⁶⁹⁾을 통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⁷⁰⁾ 중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경우에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에 대해 우선 검토해야 하는데, 북남경제협력법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남북경제협력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한다.⁷¹⁾ 그러나 북남경제협력법은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은 불완전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법도 확인해야 하며, 투자지역이나 투자방식에 따라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 외국기업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⁷²⁾ 이처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회계제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 해외투자자의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점차적으로 투자처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6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

70) 만연교, 전계 논문(주 3), 396

71) 만연교, 상계 논문(주 3), 396

72) 만연교, 상계 논문(주 3), 396

참고문헌

- 김병호. 2007.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중국회계기준의 변천을 참조하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 522—540.
- 김한중. 2005.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 373—409.
- 만연교.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중국법연구 제38집 : 379—415.
- 문준조. 2011. “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을 통해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2011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 박승일·만연교. 2019.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3호 : 69—112.
- 박형준. 2013.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 : 171—198.
- 오동호. 2009.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42호) : 247—275.
- 유재현. 2006. “베트남의 최근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평가”. 해외경제정보 제2006—28호.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 이장로·이제홍·이춘수. 2006.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 601—622.
- 이행규 외 2인. 2010.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전지명. 2009.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5권 제2호 : 87—117.
- 전홍택·오강수. 1995.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KDI 연구보고서 1995—05. 한국개발연구원.
- 정웅기. 2016.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와 기업법제의 현황과 특징”.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 155—209.
- 조은래. 2014.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 443—475.
- 최연식·정형록·이지연·김미옥. 2017. “북한 회계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북한의 회계검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 157—179.
- 최우진. 2014.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63권 제12호 : 146—183.
- 최철영. 1993.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김치관. “북 경제개발구, 중앙특구지도기관이 최저임금 결정<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2013.8.26. 통일뉴스 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55>)

정명진. “北, 중앙기관 급 ‘라선지도기관’ 신설－정부 ‘라선무역지대 개정법’ 입수 … 현지 자치
력 높여”. 2010.3.14. 통일뉴스 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66>)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院, 中国驻朝鲜大使馆商务经济参赞处, 商务部对外投资与经济合作司,
2017, 『对外投资合作国别投资指南(朝鲜)』
朝鲜平壤外文出版社. 2017. 『朝鲜概观』(中文版)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aws and Accounting System

Kim Yi-Bae* · Kang Young-Ki**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accounting system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Laos, Cambodia, and Myanmar. Here, no matter how much efforts have been made to revitalize foreign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activate it if investment risk and trust are not grounded. In fact, North Korea has revised its legislative form as a model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legislation, and it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China as well as the concrete legal structure. Thus, the institution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very similar.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unique form of the system, North Korea's own special contents can only be reflected. In addition, even if North Korea has a well-developed foreign investment law, it is not easy to attract foreign capital because of its international credit problems. Even now, North Korea is assessed to have more favorable conditions in the system such as tax cuts than China. However, there is a strong impression that the governing practice at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is still stronger than the law, and the gap between the law and actual operation will be large. Therefore, this part needs to be overcome.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legal norms of the capitalist system that guarantees that anyone can freely trade on the basis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socialist system based on the 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national control and interference, Since there are bound to be conditional constraints, it is virtually difficul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capitalist system. However, in order for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aim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to function properly and achieve its ultimate goal,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islative efforts. Although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and accounting system cannot be solved in a day,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risks will be reduced if they continue to make improvements step by step. In addition, we expect opportunities to unleash the potential to emerge as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Key words〉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special economic zone, open policy, accounting regulations, bookkeeping verification, national treatment, preferential measures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kyibae@daum.net, First Author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Financial Law Center, kyk-1006@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